#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4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윤준병・이기헌・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문대림 · 김윤덕 · 이상식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보훈·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 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 나. 한센인이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항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제19조제1항).
- 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22조제8항).
- 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 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호).
- 사.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 제2항제1호).
- 아.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3조제2항).
- 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
- 차.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 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8조의2제 1호).
- 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제1항).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 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 으로 한다.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
|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감면) ①              |
|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                    |
|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                    |
|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                    |
| 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            |                    |
|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            |                    |
|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            |                    |
| 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                    |
|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                    |
|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         |                    |
|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                    |
|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                    |
| 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                    |
|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 | <u> 2029년</u>      |
| 다.                         | <b></b>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 |
|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          |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           |                    |
| 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           |                    |

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3. (생략)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

| <u>2029년</u>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
|                    |
| <u>2029년</u>       |
|                    |
| ∥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 |
| 한 감면) ①            |
|                    |
|                    |
|                    |
|                    |

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1. 2. (생략)
- ③ (생 략)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7 감면) ① ~ ⑦ (생 략)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 <u>2029년</u>       |
|--------------------|
|                    |
|                    |
|                    |
|                    |
|                    |
|                    |
|                    |
| <u>2029년</u>       |
|                    |
| 2                  |
|                    |
|                    |
| <u>2029년</u>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
|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
| 8                  |
|                    |
|                    |
|                    |
|                    |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생 락)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 1                  |
|--------------------|
|                    |
| <u>2029년</u>       |
|                    |
|                    |
|                    |
|                    |
|                    |
|                    |
|                    |
| ·<br>2             |
|                    |
| 2029년              |
| <u> </u>           |
|                    |
|                    |
| ·<br>3. (현행과 같음)   |
| ]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
| 위한 감면) ①           |
| ле пе/ w           |
|                    |
|                    |
|                    |
|                    |
|                    |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 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 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 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4. (생 락)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u>2029년</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u>         |
| 1. ~ 4. (현행과 같음) |
|                  |
| ②                |
|                  |

동차를 <u>2024년</u>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 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 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 3. (생 락)
- ③ ④ (생 략)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락)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7 면) ① ~ ③ (생 략)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u>2029년</u>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 |  |
| 면)                 |  |
|                    |  |
|                    |  |
|                    |  |
|                    |  |
|                    |  |
|                    |  |
| <u>2029년</u>       |  |
| <u>.</u>           |  |
| 1. ~ 3. (현행과 같음)   |  |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  |
|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 4                  |  |
|                    |  |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 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 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 <u>2029년</u>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 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1. ~ 4. (생 락)
- ⑤ (생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 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 1.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
| ⑤ (현행과 같음)        |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
| 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 |
| <u>ㅇ</u> )        |
| ②                 |
|                   |
|                   |
|                   |
|                   |
|                   |
|                   |
|                   |
|                   |
| 1. <u>2029년</u>   |
|                   |
|                   |
|                   |
|                   |
| ·                 |

- 2. (생 락)
- ③ (생 락)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 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 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 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 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 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 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 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9년------
  - ③ (생 략)
- 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 <ul><li>2. (현행과 같음)</li><li>③ (현행과 같음)</li><li>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li></ul> |  |
|--|--|
|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 | 지원을 위한 감면) -----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 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 전 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 <u>2029년</u>       |
|--------------------|
|                    |
|                    |
|                    |
|                    |
|                    |
|                    |
|                    |
| 세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 |
| 면) ①               |
|                    |
|                    |
|                    |
|                    |
|                    |
|                    |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u>2024</u> 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 다

- 1. ~ 7. (생 락)
- ② (생략)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2. (생략)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 0000               |
|--------------------|
| <u>2029</u>        |
| <u>년</u>           |
|                    |
| 1. ~ 7.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 |
| 면)                 |
|                    |
|                    |
|                    |
|                    |
|                    |
|                    |
|                    |
|                    |
|                    |
|                    |
| 1 00001            |
| 1. <u>2029년</u>    |
|                    |
|                    |
|                    |
|                    |
| 2. (생 략)           |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
| 대한 감면) ①           |
| भार विदेश 😃        |

|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
|------------------------------|
|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
| 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
| 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
|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
| 분의 50을 <u>2024년</u> 12월 31일까 |
| 지 각각 경감한다.                   |

1. ~ 3. (생 락)

② (생 략)

| <u>2029년</u>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